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위한 수요자와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

-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 -

The Elderly and Social Worker's Needs for Housing Services in Community Care

- To Develop Senior Congregate Housing in Community Care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홍형욱**

박사 후 연구원 지은영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Hong, Hyung-Ock

Post-doctor : Jee, Eun-Young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to develop housing service which assists the older people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y and provides the systematization of community care.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include 533 older people between the age of 60 to 79 residing in Seoul and 84 welfare officials at a dong(洞)-office and 67 social workers working at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oth demanders and deliverers recognized that housing service for older people was necessary for community care, and, in particular, the deliverers had higher degree of necessity as people charged in welfare service. The most needed service was community alarm service which currently is proceeded partially for low-income and living-alone elders. It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people to be served. It appeared that the need for inside safety measures rather than for housing space or structural problems. It requires less effort and cost for those who need simple repair, such as safety grips or slippery protection, and safety checks. Among financial support services, the need for tax benefits appeared the most necessary service for the older people. It suggested that more 'direct' financial support service is needed for the elderly people.

▲주요어(Key Words) :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SCH)),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노인주거서비스(housing service for older people),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노인주거정책에 있어서 아직 시설중심과 저소

득층 위주로 전개되어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다수 노인의 주거문제는 제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하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다수노인을 위한 주거공급과 세분화된 유형개발은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노인들의 요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시설' 개념이 아닌 일반주택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공유공간과 관리인이 있어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

* 본 논문은 2003년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홍형욱 (E-mail : hong1215@khu.ac.kr)

원하는 주거대안으로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논의(홍형욱, 1999; 2001a; 홍형욱 외, 2003a; 2003b; 2003c)는 학문적으로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의 개발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지역사회통합형으로서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지역사회보호가 체계화되었을 때 그 성공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다(지은영·홍형욱, 2002). 그러나 한국은 지역사회보호 노인정책을 표방한지 15년이 지난 현재, 주거에 대한 지원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설된 임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¹⁾나 2002년부터 실시된 집수리사업, 노인복지법에 언급된 수용·보호 수준의 노인주거시설 등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사회적 사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대다수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즉 주택개조와 수리, 금융·재정 지원, 주택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경보장치, 복지용구제공·대여 등을 포함한 노인 주거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를 돕고 노인이 독립적으로 자기 집에서 생활하며 적극적인 선택을 통하여 '제3의 연령기(the Third Age)'를 풍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서비스의 개발방향이 점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유형의 하나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큰 밑그림으로,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도와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필요도를 통해 지역사회보호 체계화를 위한 노인주거서비스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보호 체계라는 큰 맥락 속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령사회의 주거대안으로서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수요자의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 2)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어떠한가?
- 3) 수요자 측면과 전달자 측면에서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는가?

3. 용어 정의

1)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

'노인공동생활주택'이란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공간이 있고, 공유공간과 관리인이 있어 사교·여가프로그램, 생활지원서비스 및 관리서비스가 지원

되는 주거유형이다. 접근성(accessibility standard)에 맞게 지어지며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미국의 노인공동주택(congregate housing), 일본의 실버하우징에 준하는 개념(홍형욱, 1999)으로 각종 지원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보호(communitary care)'는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집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가정에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시설과 기관 등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이 제도화되었을 때 '지역사회보호체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주거서비스

지역사회보호체계 내에서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로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 금융·재정지원서비스,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 지역경보장치서비스,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 등 5가지로 선정하였다.

II.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노인을 서비스의 소비자로 간주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주체는 수요자의 욕구에 민감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측면에서(Liam, 1984), 주거서비스 수요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요구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달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의 개발방향이 모색될 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요자 측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초고령자와 완전의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522명이다.

전달자 측면은 행정자치부의 최일선 조직인 동사무소를 지역복지센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경혜 외, 1999)와 노인주택유형 개발 시 특별관리인으로 사회복지사의 배치를 제안한 연구(박신영 외, 1999)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전달자 측면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전담공무원 84명과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67명이다.

2. 연구방법 및 자료처리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설문내용

1)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면서 신설된 급여.

· 임대가구: 1-2인 가구(28,000원/월), 3-4인 가구(40,000원/월), 5-6인 가구(53,000원/월) 지급
· 자가가구: 주거수선 제공.

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전달자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 기법을 이용하여 면접과 우편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수요자인 노인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평균, t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지역사회보호는 각 나라마다 관련된 정책과 재정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지역사회보호가 체계화된 선진복지국가들의 다양한 노인주거정책과 한국의 지역사회보호 발전과정과 노인주거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은 1980년대 들어 공공지출의 축소노력과 '지역사회보호' 이념의 확산으로 현 거주지에서의 보호 추세로 전환하였다. 즉 노인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주택건설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주거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0년에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NHS and Community Care Act)이 만들어졌고, 1992년에 자기 집에서 그냥 살고자 하는 노인들을 돕는 'Housing and community care'라는 안내서가 나오게 되었다(Tinker, 1996). 지역사회보호로의 본격적인 전환으로 자기 집에 계속 살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경보장치(community alarm), 주택개조 및 수리(care and repair 혹은 staying put), 가사지원서비스(home helps), 주간보호(day care), 식사배달(meals on wheel), 점심클럽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확대되었다(Tinker, 1996).

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조금은 1982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사회보장 및 주택공급법(Social Security and Housing Benefit Act)에 의해서 지급되는 주택급부(Housing Benefits)와 주택보조금(Housing Grants)의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룬다.

주택개조는 비영리조직인 'Care and Repair'와 'Staying Put projects'에서 자가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개조보다는 소규모의 수리와 개선이 대부분으로 경사로, 핸드레일, 계단 리프트, 리프트, 아래층에 화장실 두기, 지역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키고 유지시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Rosemary, 1996). 또한 지역마다 '지역사회경보장치 관리센터(community alarm control center)'를 두어 자기 집에 사는 노인과 보호주택에 사는 노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가입한 모든 노인들에게 24시간 대응하고 있다(홍형옥, 2001b).

최근에는 노인들에 대한 주거서비스 그리고 보호와 원조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과 참여의 한가지 사례로 주택설계를 들 수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던 건축조례(Building Regulation)의 일부(part M)가 1999년 10월부터 모든 신규주택에 적용된 점이다. 나아가 주택의 설계단계에서 노인들을 참여시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Anchor Trust 재단의 시범사업).

2. 일본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1971년)하여 재가보호의 확충을 원칙으로 하였다. '일본형 복지사회론'이라는 이념을 내세워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조능력과 가족의 부양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서비스를 유료화 하여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1980년대 말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저소득자 우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右田紀久惠·小田乘三, 1985), 2000년 개호보험법이 실시되면서 모든 노인이 지역사회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의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주택정책의 방향은 신축 주택의 장애제거(barrier-free화), 주택개조의 추진,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의 지원,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한 고령자세대의 대응과 케어설비 고령자주택의 공급 등이다. 관련된 대응책은 ① 주택개조의 상담과 조언, ② 장애제거(barrier-free화)의 보급과 촉진, ③ 무장애(barrier-free)주택의 공급, ④ 장애제거(barrier-free화) 지원 등이다.

1993년 후생성이 제정한 '주택리폼헬퍼제도'(リフォームヘルパー制度)를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주택을 개조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주택개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을 개선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노인과 동거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고령자주택 정비자금 대부'와 '생활복지자금대부', '연금복지사업단의 무장애(barrier-free)주택자금 금융제도', '주택금융공고의 할증율자제도', '효도융자' 등이 있다.

일본 도쿄(東京)의 지역복지추진계획에 의하면 노인단독 또는 부부가구, 단독 중증장애인 등의 긴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모든 세대에 '긴급통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긴급 시 도쿄(東京)소방처에 연결되어 긴급정보협력원, 구급차,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된다.

1993년 통산성(通産省)과 후생성(厚生省) 공동으로 제정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가진 '복지용구전문상담원', '복지용구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하여 요보호노인과

독거노인에게 특수침대 등 일상생활용구를 제공 또는 대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3. 한국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복지정책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로 전환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노인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이 마련되면서 노인에 대한 보호는 지역사회보호, 더 구체적으로는 재가노인보호라는 형태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부양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두고 있어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은 주로 빈곤한 독거노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아직 선진국의 기준에 입각한 지역사회보호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으며, 산업화나 경제수준에 비하면 지역사회 노인보호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수영 외, 2001).

1981년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노인주거가 정책적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홍형욱, 2002). 그러나 이는 시설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도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서비스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노인의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지원금 또는 주택보조금(Housing Allowance)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임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²⁾와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 제공 정도로 소수의 빈곤노인을 포함한 주거지원이 존재할 뿐이므로 지원서비스체계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대상확대와 급여수준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에 관한 업무와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문제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택개조(도배, 장판, 칠, 배관, 지붕수리 등)에 관한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에 연결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을 위하여 무료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택문제(법, 세금, 비용, 개조 등)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상담하는 곳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상담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혜 외, 1999).

IV. 결과 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수요자의 특성

<표 1> 수요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		
		이전	현재	
성별	남	216(41.4)		
	여	306(58.6)		
	계	522(100.0)		
교육 수준	초등졸이하	114(21.8)		
	중등졸	132(25.3)		
	고등졸	186(35.6)		
	대졸이상	90(17.2)		
	계	522(100.0)		
직업	전업주부/무직 노무/기능/농어업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기술직 경영직/관리직	206(39.7)	400(76.6)	
		96(18.4)	62(11.8)	
		92(17.7)	38(7.3)	
		72(13.8)	8(1.5)	
		30(5.8)	4(0.8)	
		24(4.6)	10(1.9)	
		계		522(100.0)
		가족 형태	혼자	44(8.4)
부부	136(26.1)			
자녀 함께	312(59.7)			
기타	30(5.7)			
계	522(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60(30.7)		
	아파트	236(45.2)		
	연립/다세대	126(24.1)		
	계	522(100.0)		
소유 형태	본인소유	346(66.3)		
	전·월세	86(16.5)		
	자녀소유	90(17.2)		
	계	522(100.0)		
개조 경험	있다	266(51.0)		
	없다	256(49.0)		
	계	522(100.0)		
사고 경험	있다	510(97.7)		
	없다	12(2.3)		
	계	522(100.0)		
건강 상태	좋은편	198(37.9)		
	보통	210(40.2)		
	나쁨	114(21.8)		
	계	522(100.0)		
평균	연령	66세		
	월소득	221만원		
	자산	3억8500		
	주거규모	35평		
	거주기간	8년 9개월		

본 연구의 수요자인 노인의 평균연령은 66세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많았으나(35.6%)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은 평균 221만원이나 100만원이하와 101~200만원인 경우가 65.9%를 차지하므로 평균이 높아진 것은 일부 고소득 대상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자산은 1억미만(36.8%)과 1억~3억(34.5%)이 대부분이나 평균자산이 3억 8500만원인 것은 10억

2) 임대가구: 1-2인 가구(28,000원/월), 3-4인 가구(40,000원/월), 5-6인 가구(53,000원/월) 지급(2002년)

이상의 고자산가가 5%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은퇴(전업주부 포함)한 노인이 대부분이며(76.6%) 노인단독가구(8.4%)를 포함한 노인가구(34.5%)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 65.5%로 많았다. 본인(배우자)소유가 가장 많았으며(66.3%), 개조·수리 경험이 있는 경우가 51.0%이며, 주택 내 사고경험은 97.6%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2) 전달자의 특성

평균연령은 30대 초반이며 복지관의 경우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표집 되었으나 복지전담공무원은 여자가 82.1%로 훨씬 많았는데 이는 서울시 복지전담공무원의 성비가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복지관련학과(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직책은 두 집단 모두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9급 및 평직원이 다수였다. 업무량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23.8%) 응답하여 복지관(4.5%)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2> 전달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명 (%)	
		동사무소	복지관
평균	연령	32세	30세
	업무기간	4년7개월	2년4개월
교육 수준	전문대졸이하	8(9.5)	5(7.5)
	대졸	66(78.6)	48(71.6)
	대학원졸	10(11.9)	14(20.9)
	계	84(100.0)	67(100.0)
전공 학과	복지관련학과	71(84.5)	65(97.0)
	기타 전공	13(15.5)	2(3.0)
	계	84(100.0)	67(100.0)
직 책	9급/복지사	57(67.9)	47(70.1)
	8급/팀장	17(20.2)	14(20.9)
	7급/과장이상	10(11.9)	6(9.0)
	계	84(100.0)	67(100.0)
업 무 만족도	만족	28(33.3)	40(59.7)
	보통	48(57.1)	26(38.8)
	불만족	8(9.5)	1(1.5)
	계	84(100.0)	67(100.0)
자격증	사회복지사	79(94.0)	56(83.6)
	// + 기타	5(6.0)	11(16.4)
	계	84(100.0)	67(100.0)

2.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견해와 차이점

노인주거서비스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요자와 전달자의 요구도 및 필요도를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여 노인주거서비스의 범위를 전망하고자 한다.

1) 수요자의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1) 현주거만족도와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비교

현주거만족도에 있어서 주거상태(2.72)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는 지역경보장치서비스(3.34)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가장 낮았으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난간·안전손잡이'(3.14),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를 필요한 개조서비스로 꼽고 있는 반면 실내공간의 크기와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도는 현주거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간 및 구조문제보다는 주택 내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높은 것으로서 노인들이 주택 내 안전 문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eywood(2001)의 연구에서 안전감을 증진시키는 최소한의 개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덜 받게 하여 보호 효과가 높다고 하였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3/4이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금융·재정지원서비스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주택관련 세금혜택'(3.42)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수리·개조비 지원'(3.16)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주택관련 세제감면혜택³⁾은 노부모 부양외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실재는 그 자녀를 위한 것으로서 노인을 위한 좀 더 직접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복지용구 상담'(3.12)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었다. 노후의 가장 염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건강이라고 볼 때 이를 보조해주는 기구(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병이나 장애에 의해 기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신체·정신상태에 맞게 어떠한 용구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담이 중요한데,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과 '복지용구 플래너'를 두어 전문적인 상담과 이용지원,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경보장치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가장 높았는데 노인은 불의의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위급 시 연락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안심줄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한국은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결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가장 요구도가 높은 서비스인 점을 볼 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자동소화기'(3.34) 제공이나 대여를 가장 필요한 주거서비스로 여기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주거만족도보다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이다.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서비스마다 각각 3.0점(필요하다)에 가까운 점수로 모두 그 필요성

3) 상속세공제, 소득세 공제(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표 3> 수요자의 현주거만족도와 노인주거서비스 세 부항목에 대한 요구도 비교

내용	세 부 항 목	현주거 만족도	서비스 요구도
주거 상태 및 주택 개조	난간, 안전 손잡이 *	.	3.14
	전기 안전점검	2.94	3.08
	바닥이 미끄러움(미끄럼 방지)	2.67	3.05
	욕실시설(수리 및 교체)	2.82	3.02
	손잡이/문(쉽게 열리는 손잡이/문 설치)	2.77	3.02
	집안의 문턱/단차 (없애기)	2.64	2.98
	지붕상태(수리)	2.71	2.94
	계단이용(주택의부에 경사로 설치)	2.29	2.94
	전기설비(교체 및 위치변경)	2.91	2.91
	욕실시설 높낮이	2.70	2.91
	보일러 (교체 및 수리)	3.03	2.90
	배관 상태(수리)	2.87	2.85
	부엌시설 (수리 및 교체)	2.78	2.84
	부엌시설 높낮이	2.74	2.84
	도배·장판·칠	2.81	2.84
	수납공간	2.67	2.55
	실내공간의 크기	2.86	2.33
	전체 평균	(2.72)	(2.84)
금융·재정	주택관련 세금(혜택)	2.52	3.42
	주택수리·개조비 보조	.	3.16
	주거비(보조)	2.50	3.08
	주택대출, 전월세비(보조)	2.70	2.92
	역저당서비스 *	.	2.57
전체 평균	(2.49)	(3.03)	
상담·정보 제공	복지·용구 상담	.	3.12
	주택 수리·개조 상담	2.39	3.03
	주택 금융 상담	2.33	2.92
	주택 법률 상담	2.26	2.92
	전체 평균	(2.33)	(3.01)
조력 시설·인력	긴급시 도움줄 인력	2.95	.
	긴급시 도움줄 시설/기관	2.32	.
	지역경보장치서비스	.	3.34
	전체 평균	(2.63)	(3.34)
복지용구 제공	화재감지기, 자동소화기	.	3.34
	욕조 매트, 욕조용 난간	.	3.00
	지팡이, 내발지팡이 등	2.15	2.80
	특수침대(욕창방지용 매트 등)	.	2.72
	휠체어	.	2.62
전체 평균	(2.15)	(2.90)	

- 주: 1) 4점척도
 2) 요구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
 3) 예비조사 결과 난간, 안전손잡이는 현재 주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주거실태만족 문항에서 제외
 4) 역저당서비스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10년 후 상환해야 하는 장기대출형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한정적이므로 제외.

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지역복지센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주거만족도가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현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받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모든 노인주거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현주거만족도 변인은 주택관련 비용으로 나타나, 즉 주거비(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와 주택관련 세금(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자금대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재정적으로 만족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더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아졌는데, 즉 현 주거상태가 불량할수록 개인적 해결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더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지역 사회보호체계 내의 노인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원하는 결과이다. 금융·재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조력시설·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긴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 혹은 시설이 부족하거나 부재된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체제로 재정적 도움과 상담이 더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지역경보장치서비스 요구도는 주택문제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았는데 주택개조나 주택금융 혹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므로 긴급 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경보장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주거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 노인주거서비스를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 수요자의 현주거만족도가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

요구도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	금융·재정 지원서비스	주택상담정보제공 서비스	지역경보 장치 서비스	복지용구 제공대여 서비스
	β	β	β	β	β
주거상태	-.32***	-.11	.04	.10	.08
주택관련 비용	-.33***	-.43***	-.43***	-.14*	-.19**
주택문제 상담	-.07	-.05	-.09	-.27***	-.21
조력시설·기관	.01	-.13*	-.16*	-.04	-.01
복지용구 사용	.03	-.03	-.06	-.04	-.03
상수	4.92	4.65	4.57	4.61	3.57
F값	40.49***	31.31***	35.17***	12.97***	7.46
R ²	.30	.24	.26	.11	.09

주: * p<.05 ** p<.01 *** p<.001

(3)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수요자의 관련변인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수요자의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주택개조·만능수리인서비스 요구도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노인은 오랜 기간동안 집안 일을 맡아 오면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거나 본 조사 대상의 여자노인의 건강상태가 더 나쁘기 때문(여 26.2%, 남 15.7%)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택규모가 클수록 요구도가 낮다는 것은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더 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택규모가 작다는 것이 주거비 지불능력의 부족을 대변하는 변수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주택소유가 본인(배우자)인 경우에 비해 자녀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데 반해 자녀소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는 그러한 권한이 작고 관심도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는 여성노인, 소규모주택에 거주하며 자신의 집을 가진 노인일 경우 요구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재정지원서비스 요구도는 연령, 자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은퇴를 앞두고거나 얼마 지나지 않은 60대의 젊은 노년층이 주거와 관련된 경제문제에 관심이 더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소득과 자산이 적은 노인일수록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재정지원서비스는 60대, 소득과 자산이 적은 노인인 경우 요구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 요구도는 자산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지병을 가진 노인인 경우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산이 적을수록 주택관련비용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기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을 체계적으로 받길 원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은 주택문제 등에 관해 해결방안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경보장치서비스 요구도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인 경우,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반면 부부가 함께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혼자 살게 되면 불안감을 느껴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표 5> 수요자의 관련변인이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

관련변인		서비스종류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	금융·재정 지원서비스	주택상담·정보제공 서비스	지역경보 장치서비스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
			β	β	β	β	β
일반적 특성	성별	남	R	R	R	R	R
		여	.32***	.08	-.03	.13**	.21***
	연령		-.33	-.18***	.06	-.02	.04
	교육수준		-.07	-.03	.13*	-.04	.05
	가족 형태	혼자	R	R	R	R	R
		부부	.08	-.03	-.06	-.33***	.04
		자녀함께	-.08	.06	.05	-.28**	-.03
	소득		-.03	-.16***	.05	-.02	.01
	자산		.01	-.24***	-.18***	.12**	-.02
건강 특성	건강상태		.02	.04	.04	-.01	-.03
	지병	있다	R	R	R	R	R
		없다	-.09	-.04	-.13**	-.05	-.01
주거 특성	주택규모		-2.88***	-.01	.08	.02	-.18**
	주택 유형	단독주택	R	R	R	R	R
		집합주택	.06	.06	.12	.04	-.25***
	주택 소유	본인	R	R	R	R	R
		자녀소유	-.17*	-.03	-.03	-.02	-.08
	거주층		.14	.06	.01	-.07	.13*
상수		3.10***	4.45***	3.03***	3.57***	3.07***	
F값		10.76***	24.58***	7.61***	7.44***	11.17***	
R ²		.21	.16	.18	.17	.12	

주: 1) *p<.05 **p<.01 ***p<.001

2) R : 준거집단

없으므로 지역정보장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사대상 여성노인이 혼자 사는 비율(10.5%)이 남자(5.6%)보다 2배정도 높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산이 많을수록 요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 요구도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거주층이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에 비하여 아파트에 사는 경우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남자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해줄 수 있는 용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는 노인들이 생활하기가 편리하므로

복지용구에 대한 요구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거꾸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사회의 작은 규모의 주택에 사는 여자노인이 요구도가 복지용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1) 현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와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비교

현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를 살펴보면(<표 6>), 동사무소의 경우는 주택실태조사와 실내공간크기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관의 경우에는 도배·장판·칠과 주택실태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아

<표 6> 전달자의 현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와 노인주거서비스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도 비교

내 용	항 목	주거관련 업무 수행도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	
		동사무소	복지관	동사무소	복지관
주거환경 개선 업무 및 주택개조·난방수리인 서비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1.10	1.52	3.83	3.85
	집안의 문턱, 단차 없애기	1.12	1.52	3.74	3.81
	난간, 안전 손잡이	1.15	1.51	3.74	3.78
	욕실시설 수리 및 교체	1.07	1.43	3.57	3.52
	엇게 열리는 손잡이·문 설치	1.07	1.54	3.52	3.58
	욕실시설 높낮이	1.06	1.39	3.49	3.64
	전기 안전점검	1.85	1.55	3.49	3.30
	전기설비 교체 및 위치변경	1.50	1.58	3.46	3.51
	주택외부에 경사로 설치	1.11	1.36	3.37	3.46
	부엌시설 수리 및 교체	1.14	1.54	3.26	3.45
	보일러 교체 및 수리	1.81	1.61	3.26	3.09
	부엌시설 높낮이 수리	1.07	1.54	3.25	3.54
	배관 상태 수리	1.40	1.55	3.01	3.03
	도배·장판·칠	1.92	2.39	2.98	2.94
	실내공간의 크기 확대 공사	1.12	1.67	2.65	3.10
	수납공간 마련	1.02	1.52	2.64	2.88
지붕 수리	1.31	1.40	2.60	2.73	
주택실태 조사	1.94	1.94	.	.	
	전체 평균	(1.30)	(1.57)	(3.22)	(3.31)
금융·재정 지원서비스	주거비 보조	1.86	1.64	3.48	3.39
	주택대출, 전월세비 보조	.	.	3.30	3.28
	주택수리·개조비 보조	1.45	1.55	3.26	3.43
	역지당서비스	.	.	3.02	2.99
	주택관련 세금 혜택	.	.	2.92	3.27
	전체 평균	(1.65)	(1.60)	(3.20)	(3.27)
주택상담·정보제공 서비스	복지 용구 상담	1.56	1.88	3.40	3.30
	주택 수리·개조 상담	1.37	1.64	3.12	3.27
	주택 금융 상담	1.79	1.45	3.10	3.22
	주택 법률 상담	1.31	1.61	2.95	3.13
	전체 평균	(1.51)	(1.65)	(3.14)	(3.23)
긴급경보 장치서비스	긴급경보장치 (지역정보장치서비스)	(1.74)	(1.45)	(3.69)	(3.43)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	(1.42)	(1.76)	(3.62)	(3.54)

주: 1) 4점척도
2)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

(1.53, 1.61)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경보장치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서비스라고 하였으며,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3.54)가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노인주거서비스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각 기관과 시설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주거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도를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최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서비스 필요도를 볼 때, 지역경보장치서비스와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는 복지전담공무원이,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와 금융·재정지원서비스,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보장치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7>), 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보다 더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노인에 대한 즉각 대응의 관점에서 더 지역밀착형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전달자 간 지역경보장치서비스필요도의 차이

집 단	서비스	지역경보장치 서비스
동사무소		3.69
복 지 관		3.43
t 값		2.69**

주: *** p<.001

전체적으로 보면 현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보다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각 서비스별 세부항목에 대한 두 집단의 필요도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세부항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문제는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으나 복지전담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주거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가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력

현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가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표 8>), 지역경보장치서비스 필요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금융·재정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수행할수록 낮았고, 긴급경보장치업무를 실시할수록 그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보장치서비스는 동사무소의 복지전담공무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표 8> 복지전담공무원의 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가 지역경보장치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력

주거업무	필요도	지역경보장치 서비스
		β
주거환경개선		.13
금융·재정지원		-.27*
주택문제상담		.22
긴급경보장치		.23*
복지용구		.08
상 수		3.74***
F값		4.41*
R ²		.10

주: * p<.05 *** p<.001

인식하는 주거서비스로서 독거노인의 긴급경보장치 신청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수록 지역사회의 일반노인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라고 더욱 절감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업무를 하면서 복지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서비스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표 9>), 지역경보장치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주거환경개선 업무와 주택문제상담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역시 주거환경개선 업무를 하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주거실태조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업무(1.57)와 이에 대한 상담업무가 저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전문적인 기술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주거개조 등의 개인 수혜위주의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지역경보장치서비스와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와 같이 일반적 서비스를 더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9>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주거관련업무 수행정도가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력

주거업무	필요도	지역경보장치 서비스	복지용구제공 대여서비스
		β	β
주거환경개선		-.37*	-.42*
금융·재정지원		.18	-.01
주택문제상담		-.44*	.03
긴급경보장치		.14	.20
복지용구		.09	.12
상 수		3.99***	4.00***
F값		2.95*	21.9*
R ²		.20	.16

주: * p<.05 *** p<.001

(3)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주는 전달자의 관련변인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주는 전달자의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동사무소의 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는 금융·재정지원서비스,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금융·재정지원서비스는 연령이 많을수록 필요도가 높았으며,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는 업무기간이 길수록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연령이 많고 업무를 담당할 기간이 길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더욱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를 위한 주거서비스로서 재정적 지원과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0> 동사무소 복지전담공무원의 관련변인이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력

주거업무	필요도	금융·재정지원 서비스	상담·정보제공 서비스
		β	β
연령		.24*	.16
학력		.01	.13
업무기간		-.19	.30*
상수		2.48***	2.98***
F값		4.92*	8.08*
R ²		.06	.09

주: 1) * p<.05 *** p<.001 2) R: 준거집단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지역경보장치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11>).

업무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수록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지역경보장치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관련변인이 노인주거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력

주거업무	필요도	지역경보장치 서비스
		β
연령		.18
학력		.25*
업무기간		.31*
상수		2.62***
F값		4.73*
R ²		.13

주: * p<.05 *** p<.001

3) 수요자와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필요도의 비교

수요자와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 종류별 요구도와 필요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세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전달자가 수요자보다 모든 노인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지역경보장치서비스는 동사무소의 복지전담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수요자인 노인 역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평균 3.0이상), 전달자가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일선기관(시설)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노인의 주거보장과 이에 관련된 주거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수 일반노인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표 12> 세 집단간 서비스 요구도·필요도의 차이

집단	서비스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		금융 재정지원 서비스		주택상담·정보제공 서비스		지역경보장치 서비스		복지용구 제공대여 서비스	
		M	D	M	D	M	D	M	D	M	D
수요자		2.88	A	3.03	A	3.00	A	3.34	A	2.90	A
전달자	동사무소	3.22	B	3.20	B	3.14	A	3.69	B	3.62	B
	복지관	3.31	B	3.27	B	3.23	B	3.43	A	3.54	B
F비		29.55***		7.24**		6.68**		8.70***		57.93***	

주: D; Duncan's MRT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서비스의 개발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사회통합형으로서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필요성을 지역사회보호 체계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제기하고자 하였다. 서비스의 수요자인 노인과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통해 노인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를 기대한다.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의 노년 전용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체계화된 서비스를 연계·이용하여 다양한 욕구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향상과 주거보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열망과 전달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얻은 앞으로의 과제는 <그림 1>과 같다.

1. 주택개조·만능수리인 서비스

노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기존의 주택을 개조할 수 있는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택 내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미끄러움 방지와 안전손잡이 설치와 같이 간단한 수리는 만능수리인 서비스에 맡긴다. 이는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목욕서비스나 이동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도와 재가복지의 효과를 증진시킨다.

노인공동생활주택 계획 시 유니버설 디자인과 생애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단계에서 노인을 배려한 주택을 도입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주택금융·재정지원서비스

주거비보조와 개조비용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한 세대주에게 주는 주택자금할증용자제도와 노부모 동거가족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은 고무적이긴 하나 좀 더 적극적인 금융·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의 편의를 위한 주택개조 시 융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거나 개조에 대해 저리 융자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 전용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생애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제거(barrier-free) 개념이 도입된 주택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

주택상담·정보제공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시 이용의사가 아주 낮은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경제력이 있는 노인일수록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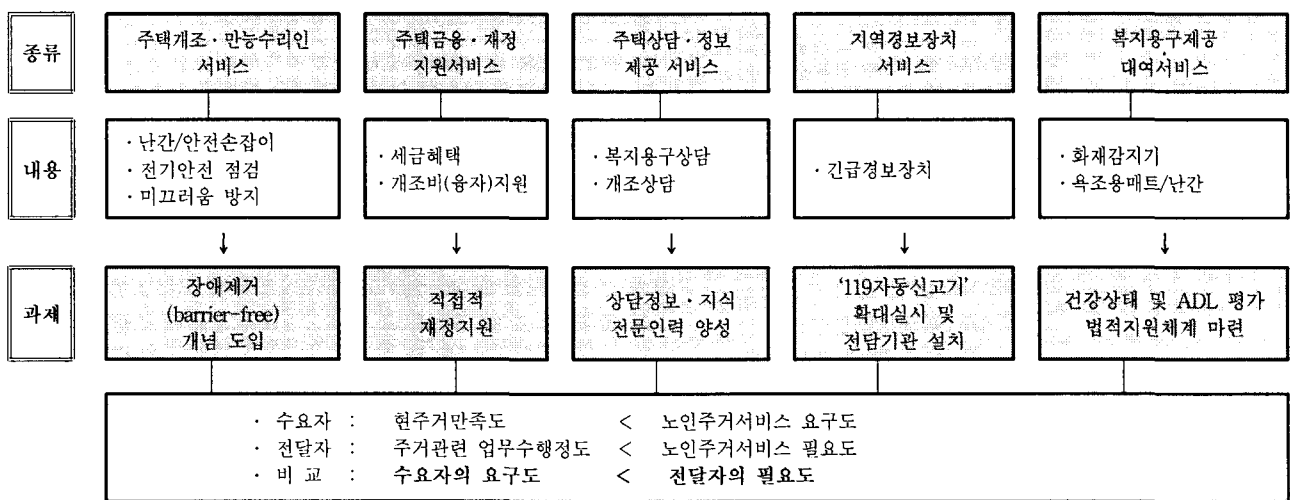
용의사는 더욱 낮아졌다. 따라서 동사무소·구청 등을 지역복지센터로 구축하여 무료로 주택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각 가정과 노인공동생활주택 거주자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홍보와 지속적인 개선, 상담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4. 지역경보장치서비스

지역경보장치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열망은 상당히 높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서비스이다. 현재 최저소득 독거노인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결하는 긴급경보장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산층 노인까지 포함하여 수요가 늘어나면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보호를 앞서 실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취볼 때 지역복지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을 두어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보장치서비스는 유료화 하더라도 수요가 있어 노인의 경제상태에 맞게 지불 가능한 비용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면 충분히 시장경제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5. 복지용구제공·대여서비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2002)의 5대 분야 향후 추진계획 중 실버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용품 생산·유통 확대를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 등과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고 노인복지용품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위한 노인주거서비스의 구체화

<그림 1> 노인주거서비스의 개발방향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왜 노인의 신체상태에 맞는 용구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담이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과 '복지용구 플래너'를 두어 전문적인 상담과 이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으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11월 13일

□ 심사 일 : 200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1월 19일

【참 고 문 헌】

- 김경혜 · 김중주 · 허수연(1999).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수영 · 김경호 · 성명옥 · 조추용(2001).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서울: 양서원.
- 박신영 · 김주진 · 최은희(1999). 노인주택의 공급현황과 공급제도 개선방안, 81-102. 99 주택연구소 연구성과발표회논문.
- 보건복지부(2002).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http://www.senior21.or.kr>)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
- 지은영 · 홍형옥(2002). 노인 주거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7-148.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http://www.jahwal.or.kr>)
- 홍형옥(1999). 한국의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주거의 대안적 모색-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념 도입과 제도적 탐색-. **한국주택학회지**, 7(2), 75-91.
- _____(2001a).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0.
- _____(2001b). 영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49-68
- _____(2002). 노인의 지역사회보호에 있어서 주거관리의 역할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51-68.
- 홍형옥 · 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83-95.
- _____(2003).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체계와 주거서비스 요구도. **대한가정학회 제 56차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5.
- Hong, Hyung-Ock., Rhee, K. H., Kwon, O. J., Kim, D. Y., Choi, J. S. & Cho, J. S.(2003a), Attitudes toward Elderly Housing Issues and Preferences of the Middle Aged Korean. *The 12th Biennial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234.
- Hong. Hyung-Ock., Kwak. In-Soo., & Rhee, Kyung-Hee. (2003b). A Study on Korean Adaptation of Congregate Housing for Elderly People of Sweden and Denmark. *The Sr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22-47.
- Hong. Hyung-Ock. & You, Byung-Sun.(2003c). Comparision of Three Countries about Congregate Housing for Older People-with focus to Sweden, U.K and Korea. *The Sr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48-68.
- C. Liam(1984). *Domiciliary Services for the Elderly*. London, Croom Helm.
- Heywood, F., Oldman, C. & Means, R.(2002). *Housing and Home in Later Life*. Open University Press.
- Rosemary B.(1996) *Developing services for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 Tinker, A.(1996). *Older people in modern society*(4th ed) London: Longman.
- 右田紀久恵 · 小田乘三(1985). *地域福祉講座*. 東京, 中央法規出版.